

제429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7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8)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0)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2)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2)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0)
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0)
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27)
10.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7)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1)
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1)
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3)
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2)

상정된 안건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2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2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8) 2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0) 2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2) 2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2) 2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0) 2
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0) 2
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27) 2
10.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7) 2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1)

.....	2
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1)	2
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3)	2
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2)	2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박정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은 맡게 된 박정하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하게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절차를 간사님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3)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1)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8)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0)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2)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2)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0)
8.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0)
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227)
10.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7)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1)
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1)
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3)
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2)

(10시08분)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배제입니다.

현행법은 징계요구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고·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수단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주무부처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본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취지와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6쪽부터 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 재심의입니다.

김승수 의원안, 정연욱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승수 의원안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연욱 의원안은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재심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외부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절차, 내용적 합리성, 공정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육계의 스포츠 비리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주업무로 하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협의자에 대한 심의까지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입니다.

개정안은 개별 체육단체 정관에 있는 임원 임기 및 연임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외부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공정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한체육회에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간 체육단체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여러 권한을, 징계나 연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조사기관은 조사에 충실하고 그리고 징계나 연임 심의 등의 그런 의사결정은 체육단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가 생긴 것이,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공정치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권위원회나 체육기자연맹, 문체부 등등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정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게 공정치 않느냐라는 지적이,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진 지금 시점에서는 임원 연임 심의도 그렇고 각 징계도 그렇고 체육단체 내지는 체육회에 맡겨 주셔도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스포츠공정위의 공정성이 높아졌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근거가 제시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동안은 대한체육회장이 친분에 따라 임명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됐다면 지금은 변협에서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체육학회, 체육기자연맹, 국가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문체부, 체육회 이래서 지금 외부에서 6명이 참여를 합니다.

○**민형배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면 공정성이 담보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무래도……

○**민형배 위원** 아직 운영을 안 해 봤잖아요. 지금 구성만 했지 운영을 안 해 봤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한 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지금……

○**민형배 위원** 그때 어땠어요, 그래서 그때 결과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성을 다양화해서, 즉 이전에 대한체육회장 지배하에 있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구성을 다양화해서 이제 공정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실증자료를 제출해 보시라고요. 제시해 보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것은 위원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연임 심의 규정을 운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임이 안 되고 탈락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대한체육회장의 개인 권한에 따라서 구성이 되면서 탈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

○**민형배 위원** 한 번 해 보셨나요,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것은 자료를……

○**민형배 위원** 운영을 한 번 해 보셨는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공정하다고 할 만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공정위원회가 이기홍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심의였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5년을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고요. 이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계획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은 이기홍 회장이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리고 지금 위원들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7개 기

관의 추천들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회장이 여기서 거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몇 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현재 15명으로 공정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25명 중에서 7명 들어와 가지고 그게 공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아니, 15명으로 구성되고요.

○민형배 위원 15명?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대한체육회가 3명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들이 추천하는 인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전에는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전에는 대한체육회 회장이 대부분 다 지명한 사람들만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냥 지명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민형배 위원 어떻게 그렇게 스포츠공정위가 운영되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렇게 변질돼서 저희가 이거를 정관에다가 못 박았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이 두 분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하고, 그러니까 법안하고 문체부·체육회·전문위원 검토가 다, 이 세 분은 똑같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안만 좀 달라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제시한 이 법안이 아니라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스포츠공정위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라고 하려면 스포츠공정위가 공정하게 이걸 진행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증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그걸 채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저희가 그 이후에 심의된 건들을 정리해서……

○민형배 위원 그런데 한 번밖에 없다며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것도 추가로 있는데 제가 그건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한 가지, 기존에는 종목 하위단체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정관으로 바꾸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하위단체는 상급단체가 징계를 심의하도록 일단 바꿔 놨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인데 이 부분……

○민형배 위원 그것은 잘못하면 상급단체의 지배력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자체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정부부처에서 그걸 다 제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3의 영역에서 제3의 기관이 이 문제를 다루자라고 하는 의견하고 기존에 있는 체제 내에서 강화해 가겠습니다라는 의견의 차이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제3의 기관을, 스포츠윤리센터의 목적을 조사만 하는 기관이라고 지금 차관님 그러셨어요.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3이 스포츠 윤리센터인데 여기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목적의 1번이 뭐냐 하면 체육의 공정성 확보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사기관이라고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민형배 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런 기능을 부여해 보면 어떻겠느냐 대신 그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기준에 있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조금 더 잘 운영해 볼게요, 여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준에 있던 상급단체가 제대로 하게 해 볼게요, 여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지금 체육회·문체부 다 입을 맞추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니, 위원님, 입을 맞춘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민형배 위원 입을 맞췄다는 건 방향이 같다는 뜻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이거를 이렇게 대비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이 감사나 조사하잖아요. 조사 한 주체가,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문체부 직원 어떤 감사를 했을 때 감사도 감사원이 하고 정계까지도 감사원이 내린다는 그런 식으로 똑같은 구조가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없고, 요구만 할 뿐입니다. 요구하면 다시 기관에서 심의해 가지고 징계를 하는 이런 절차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제 질문은 스포츠윤리센터가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스포츠공정위를 잘 꾸렸다가 아니라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고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그거를 스포츠윤리센터가 맡기에 부적절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조계원 위원 제가 얘기를 좀……

○소위원장 박정하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제가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도 그렇지요. 수사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윤리센터는 별도의 기관이고, 조사하고 일종의 수사를 하는 기관이고. 여기서 수사한 결과를 물론 통보를 해야겠지만 그에 따른 심판과 판정은 별도의 판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기존에는, 아마 김승수 의원님이 법안 발의한 이 시점도 사실은 작년 11월 14일입니다. 그때 시점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을 보면서 이 법안을 발의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되겠다. 이제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구성과 역할이 주어졌다면 이제 정확하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본연의 위상을 갖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엄정하게 조사할 거 조사하고 그에 따른 결과들을 스포츠공정위원회나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작년 이기홍 회장 체제로 개인 사유화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될 정도로 개인의 문제, 회장 개인의 문제가 좀 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모든 단체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는 건 저 또한…… 이 법에 대해서는 작년 이기홍 회장의 그 개인만 봤을 때는 어떠한 강제성을 접목시키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보다는 큰 틀에서 체육단체를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전문위원부터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말

씀이 있었는데 윤리센터는 체육단체의 상급기관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리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서 징계를 요구하는 기관인 윤리센터가 징계까지 심의하는 것은 저는 과다한 권한 부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앞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의 경우도 조사만 하고 징계 권한이 없어요. 징계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요구에 관련돼서도 재심의를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타 부처·타 직능의 사례를 우리가 항상 같이 눈높이 선상에서 보는데 유독 체육단체에게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독 체육단체에게만 징계도 그렇고 모든 게 강화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도는…… 90%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10% 때문에 계속해서 법으로 강화시키는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포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스포츠 인들, 체육인들? 일체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언쟁이 있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사면제도 자체도 없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계 같은 거를 강화시키려면 반대로 사면제도도 좀 만들어 놓고 좀 형평성에 맞게 취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좋은 장점만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체육단체들에게 좀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쟁점이 두 가지로 갈려 있는 것 같은데, 임오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인이 체육단체를 운영했을 때 부작용이 생겨서 이 법안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체육회 내에 있는 공정위원회가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건 하나, 두 번째는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의 기관이 조사와 징계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 쟁점이 나뉘는데 법안 발의하신 김승수 위원님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진종오 위원님.

○진종오 위원 제가 법안 발의한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과 함께 하신 걸 보면 지금 윤리센터가 징계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징계를 어떻게 처분한다 그런 것보다도, 저는 조금 체육계를 대표적으로 발언을 하자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수사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법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의하기는 하나 조금만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윤리센터가 징계를 내리기에는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좀 첨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체적으로 잘 못할 때는 옆에서 곁에서 혹은 아래에서 위에서, 다른 쪽에서 접근해 줘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리고 금방 체육회장 바뀌었으니까,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될 거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첫째는 없고.

두 번째는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규정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3의 기관이든 뭐든 그냥 수평적인 여러 기관 중의 하나예요. 문체부 산하에 있는 여러 기

관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보냐 하면 굉장히 약하다고 봐요. 작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 위에서 뭘 한다고 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잘 안 되니 다른 기관에 징계 심의를 한번 맡겨 보자, 저는 이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모순이 다 해소가 됐어. 상급기관도 아니야. 그런데 뭘 이걸 여기다 해’ 그렇게 생각하면 이 법 빨의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당시 상황하고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을 너무 염려하고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윤리센터를 그냥 하찮은 기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동등하게…… 아니, 왜 체육회가, 체육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해서 옆에 있는 다른 기관, 그러니까 부처가 제대로 일을 못 해서 동등하게 있는…… 감사원이 상급기관 아니에요. 국가의 기관 중의 하나이지 정부기관하고 비교해서 감사원이 상급기관인 게 아니라고요. 국회가 법원에 대해서 상급기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스포츠윤리센터도 그냥 여러 스포츠 관련한 기관 중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기능을 부여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스포츠윤리센터는 약하고 역량이 안 될 거고 이게 무슨 상급단체가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이걸 그냥 하지 않으려고 만드는 논리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스포츠윤리센터가 약해서 거기 주면 안 된다는……

○민형배 위원 상급단체화한다며요, 이렇게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민형배 위원 무슨 상급단체가 됩니까,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징계권도 인사권의 일종입니다. 인사권은 해당 관련된 기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체육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다른 기관이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지요, 만약 그렇게 따지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윤리센터에는 체육단체에서 징계한 것이 너무 경미할 때는 재징계를 요구하는 권한까지도 부여가 돼 있고, 요구권은 부여가 돼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여기서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거기다 징계권까지 주는 거는 저희들의 행정 체계상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고요.

○민형배 위원 아니, 징계 심의를 하게 돼 있지 무슨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법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소위원장 박정하 우선은 제가……

○진종오 위원 이거는 보니까 징계권이 아니라 징계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징계 심의니까 이거는 저는 좀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장이 자꾸 개인 의견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저는 민형배 위원님 말씀 중에 타당한 점이 있다고 봐요.

그에 앞서서 체육회 그다음에 체육회에 있는 공정위원회가 원래 애초에 시작할 때 정

관 만들고, 이기홍 전 회장 계실 때 초기부터 이렇게 해 오지 않았잖아요. 체육회 안에서 사정 변경이 계속 생겨 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회장의 자율적인 권한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공정위원회라는 것도 사실 그 안에서 정리되고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테스킹 기능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회장의 직속처럼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형배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러면 공정위원회가 과연 열다섯 분 중에서 일곱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다 해서 그게 계속 이렇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가 담보가 돼야 이 법안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형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정위원회 진짜 잘될 수 있고 이거는 정말 독립적으로 잘 갈 수 있다, 누가 봐도 체육회 내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걸러질 수 있다라는 게 담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담보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잘 못 주시는 거고.

두 번째, 그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다른 기관에 줄 거냐 이건 또 다른 별도의 문제예요. 만약에 공정위원회가 완전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더 논의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 지금 충분히 설명을 못 주시니까 민형배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시고 저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거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윤리센터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기관이 됐든 정계 심의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요.

차관님 말씀 한번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바뀌는 게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바꿔야……

○소위원장 박정하 규정이 어떻게 되었냐면 정관이 오다가 정관이 바뀌어, 체육회 안에 서요. 정관이 바뀌고 이것마저도 당시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문체부에서 또 승인을 해 줘요. 그게 애초에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환경이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지.

지금 어떻게 가다가 옛날 이기홍 체육회장처럼, 아니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체부 차관처럼 이렇게 변해 버린다, 변질된다라는 거를 담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규정을 어떻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방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형배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운영에서 문체부도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를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정관 변경 안 되도록 승인하지 않고 그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법 체계적인 문제로, 조사하는 기관에서 정계 심의까지 하는 부분은 체계상으로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임 심의 이런 부분도 체육단체에서는 다 잘 알기 때문에 심의가 되지만 조사기관인 윤리센터에서는 제출된 자료 말고는, 심의하는데도 단체만큼 잘 알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니까 그거 전제 이전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해도 되고 공정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공정하게 갈 수 있느냐 그거를 설명을 주셔야지.

○민형배 위원 한말씀 더 보태면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서 풀어 가도록 하는 체계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자꾸 고장이 났어, 그동안. 그래서 이걸 고치는 방법이 뭐야? 자체적으로 고쳤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걸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 신뢰할 수가 없어, 아직은. 그래서 내부의 문제지만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금 이 법의 입법 취지 아니에요. 거기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자꾸 스포츠윤리센터가 상급기관화한다고 이런 식의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저희 체계가 징계까지는 내부에서 알아서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임오경 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83개 각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차관님, 83개의 종목단체가 있는데 그 종목단체들이 어떠한 문제 사안들이 생기게 되면 절차, 컨트롤타워 다 무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다 신고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83개의 종목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목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핸드볼이다 그러면 핸드볼 종목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일차적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보고가 다음 대한체육회에 올라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한체육회에서 재심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요. 이 하부기관들은 아예 밟지 않고 무조건 다 스포츠윤리센터에다 지금 다 신고해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인력 부족, 과부하로 인해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보다 더 큰 기관으로 예산편성 해 주고 그렇게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83개 종목단체, 대한체육회 모든 권한 다 박탈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그 종목단체들도 문제지만, 현장의 문제지만 자기들 기관에서 자기들 역할들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게 정부의, 대한체육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만 무언가 역할을 두게 돼서…… 그러면 그 체계가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83개 종목단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저는 이거 문제부에서 정확하게 답을 내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역할을 못 했을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에다가 심의를 맡기고 그거를 가장 강하게 대한체육회만 심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그렇게 역할을 나눠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컨트롤타워가 지금 다 무너진 상태이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잡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차관님, 그전에 문제됐었던 것처럼 지금 체육회의 정관 변경하거나 이럴 때 문제부 승인을 받게 돼 있나요?

국장님,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받게 돼 있고, 공정위원회 구성할 때도 문제부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협의를 하도록……

○소위원장 박정하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정관에다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이전에는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못하게끔 정관.....

○소위원장 박정하 협의라는 건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그전에 겪었던 것처럼 체육회 내에서 그냥 막 굴러갈 수 있는 일을 방지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래서 저희가 보조장치를 둔 게 1월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상에 각 체육단체가 징계를 제대로 못 했을 때 재징계 요구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예산 제한을 2년간 하게끔 그렇게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쟁점이 좀 있으니까 법안 1·2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체부에서 위원님들한테, 공정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고 그래서 안심하고 체육회의 문제가 그동안 노정됐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걸 좀 더 설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법안을 다시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 이거는 저하고 정연욱 의원하고 같이 발의를 했는데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애초에 이 법 발의의 배경 이런 것들은 앞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일단은 체육인들이, 체육인 출신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이게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불공정한 처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조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처분을 받고 이렇게 하면 팬참을 텐데 대체로 보면 최종 징계권은 협회·단체에 있다 보니까 협회·단체가..... 또 보면 문제 제기를 한 체육인들도 체육활동을 계속하는 한 결국은 그 협회·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마지막 최종 징계권은 협회·단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의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쪽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지요. 계속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위의 상급기관으로 스포츠공정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전임 체육회장의 어떻게 보면 사조직 비슷하게 운영이 됐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운영이 됐느냐? 체육회장이 연임 또 삼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또 대체로 징계요구가 오는 사람들이 협단체의 임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후하게 결정을 내려 왔던 그런 게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 제기로 이 법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앞서 체육국장이나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공정위의 구성을 체육회장이 임의로 못 하게 상당히 개편을 했다, 그래서 실제 한번 회의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법을 제대로 우리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민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의 스포츠공정위의 운영체제 이게 차관님이 장담하시는 것처럼 정말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또 그래도 스포츠공정위에 맡겨 놓는 것이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법 개정안 대로 이렇게 권한을 줬을 경우에 임오경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스포츠윤리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 과부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직이나 인력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판단하기에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보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조 위원님.

○조계원 위원 조금만 더 보완하자면, 이 법안대로 하게 되면 스포츠윤리센터장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위원회 구조에서의 다양한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고 스포츠윤리센터장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놈은 무기징역이다.

○소위원장 박정하 조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민형배 위원 아니,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아니, 그러니까……

○조계원 위원 제도가 없는데 무슨 위원회입니까?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일단은 1·2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숙고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원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좀 더 고민해 봐 주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2쪽입니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장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건데요.

개정안은 법률에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단체의 내부 규정으로 규율되어 온 사항이 상향 입법됨으로써 체육단체장의 자격에 대한 강제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춰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정관에 상당히 여러 결격사유가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성폭력 부분, 아동·청소년 성범죄 부분 일부만을……

죄송합니다.

체육회장 등의 결격사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회장만이 아니라 임원들 부분까지도 이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결격사유가 지금 정관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의 일부만 법률에 정하고 나머지는 정하지 않게 되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법률에 있는 것만 결격사유가 되고 정관에 있는 부분은 무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전체를 법률에 결격사유로 규정하자니 그거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수정의견은 회장의 결격사유를 임원으로 확대를 하되 다만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청에 요구하도록 해서 문제가 있는 체육인들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법률안으로 규정하는 것 말고 선출 당시에 범죄경력조회서 같은 걸 제출키로 해서 거기서 판단하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 판단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는 판단이 잘 안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제공을 하기 때문에 경기에 등록할 때 등록을 하지 않는 거지요. 원천적으로……

○소위원장 박정하 아예 원천적으로 거기서 막는다는 걸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도록.

○임오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조금 말씀드리면요, 현재는 범죄경력 조회가 안 돼서 개인이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를 내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걸리지 않아서 실제로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정하 진 위원님 말씀 주세요.

○진종오 위원 이게 필요한 규정이기는 한데 지금 차관님 말씀처럼 임원들까지 전부다 한다라는 것은, 임원이라 하면 이사도 있고 그러면 이사진들까지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범죄경력 있잖아요. 범죄경력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으세요? 왜냐하면 범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음주운전도 있고 성범죄도 있고 각종 경범죄도 있는데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정관에 결격사유라고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조회를 하도록 하는……

○진종오 위원 규정된 범죄행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여기 빠진 것은 승부조작에 관련된 형법상 업무방해죄 그다음에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의 직무횡령범죄 이런 형태로 규정돼 있어서요 개별 경범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승부조작 같은 경우도 아까 임오경 위원님 말씀처럼 사면의 조건이 필요한데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 승부조작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조항이긴 한데 임원까지 한다라는 건 너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김 위원님.

○김승수 위원 박덕흠 의원안에 들어가 있는 범죄들은 사실상 체육단체 회장, 임원으로

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범죄만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이 정도를 굳이 법에 안 담고 정관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법에 규정하기에는 좀 과도하다 생각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김승수 위원 이거는 다 규정한 것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성범죄와……

○임오경 위원 이거를 법에다 실으려면 열일곱 페이지를 실어야 돼요.

○김승수 위원 예?

○임오경 위원 법에 결격사유에 관련돼서 실으려면 열일곱 페이지를 여기에 다 넣어야 돼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결격사유 다 넣는 게 아니고 정관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하는 사람이라 해서 위임을 했잖아요, 법안에는 이렇게 있고. 그런데 수정의견은 앞의 것까지 썩 다 빼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범죄하고 폭행죄까지도 빼자는 거 아니에요, 문체부 의견은? 굳이 이거를 뺄 이유가 있느냐 그거지요.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임원까지 확대를 하면 성범죄야 당연히 배제돼야 되겠지만 폭행이나 이런 쪽은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일시적으로 특정 단체나 이런 데 많은 임원들이 쑥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은 없지 않아 있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3호에 정관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결격사유는 법률에 규정을 해야지 정관으로 위임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예 이 조항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범죄경력 조회의 조항으로 접근하는 게, 또 타 부처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범죄경력이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걸려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정하 그냥 그렇게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등록을 받지 못하게……

○소위원장 박정하 아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될 때마다 이거 강화하는 요청이 계속 있었고……

○진종오 위원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박덕흠 의원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범죄는 최소 수준이 정도는 당연히 배제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넣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체육국장이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만 명시를 했을 때는 이 두 개만 법적 근거가 있는 제한 조건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이 이외의 범죄를 저지를 자들이 법적 근거 없이 자기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개만 규정하는 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지요. 그러면 이 범죄까지도 법 안에 없으면 똑같

은 주장을 하는 거지요. 법에도 없는 걸 가지고 정관에다 넣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조차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결격사유를 법에 담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 범죄경력 조회 정도의 내용만 포함시켜도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종목단체 그리고 시도, 228 시군구까지도 저희가 통틀어서 한번 볼 때 지금 회장분들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박덕흠 의원님 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면 지금 범죄경력 조회만이라도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지방에 있는 회장단들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다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은 다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로하신 분,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특히 격투기 종목 같은 경우는 더더욱 범죄경력 조회 한번 열어 보시면 웬만한 것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적용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범죄경력 조회 정도만으로 내용을 포함시켜서 실용성 있게 저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이것만 해 놓아도……

○소위원장 박정하 충분히 걸려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추가적으로 혹시……

김 위원님.

○김승수 위원 이게 어쨌거나 앞으로 이런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가지고 안 되도록 하는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동안 범죄경력 조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협회장이나 또 임원으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몇몇 단체나 또 지역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 또 특히 비인기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미 현직에 이런 범죄경력을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미래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짹 빠져나가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진공 상태에 빠지는 그런 협단체도 많이 나올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박덕흠 의원안에서 예시한 범죄행위 중에서 성폭력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제를 시킨다 하더라도 특히 폭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고 이상이고 10년 경과하지 않으면 다 포함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정관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계원 위원 어차피 이게 소급 입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임원이나 대표로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진종오 위원 해당이 안 되지요.

○조계원 위원 새로이 임명되려고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시행 이후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한……

○임오경 위원 법을 보게 되면 범죄경력 요청을 하되 범죄 확인 시 그다음의 대처가 없어요, 이 법안에는. 그렇지요? 이게 범죄 확인 시 단체장이 될 수 없다, 이사가 될 수 없다, 임원으로 될 수 없다 이것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범죄경력 조회

정도의 내용을 포함을 시켰지만 포함만 시켰지 그다음 내용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범죄가 있으면 정관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답니다.

○임오경 위원 범죄가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단체장이 될 수 없다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장치는 정관에 다 돼 있답니다.

○조계원 위원 정관에는 돼 있는데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는 없다,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없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정관에 따라서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박덕흠 의원님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당위와 현실 사이에 고민이 있으니까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 위원님이 주신 말씀 보완해 가지고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수정안 지금 제시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 수정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에 동의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이게 예방 효과도 아주 크다, 범죄 전력자들이 임원이나 대표로 취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팬찮은……

○소위원장 박정하 정관의 규정을 통해서……

○조계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2쪽입니다.

아동·장애인·노인 학대관련범죄 경력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입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체육지도자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아동·장애인·노인 학대관련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체육지도자의 지도 대상을 고려할 때 아동·장애인·노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들은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2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비율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비율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돼 조성된 재원의 여유자금 규모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배분 비율 사업의 실제 수요에 못 미치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안에 의할 경우 학생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안전관리,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초·전략종목 육성 등 체육 분야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법정 배분 비율에 따른 예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규정한 비율만큼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또한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이 사안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체육정책과장 할 때 스포츠토토 적립금이 문체부장관의 쌈짓돈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 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 해서 그때 기재부가 동의를 해 줘서 기금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다만 기존에 쓰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법정 비율을 정하자라고 해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5%, 5%, 10%로 규정이 된 겁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된 거지만 법정 비율을 법률에서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강행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여기에 기속이 되는 건데 예산 당국에서 이것은 무리한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서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한 의견을 남겨 가지고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이 비율이 지켜지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표현상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는 ‘사용한다’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석은 기속되는 의미로 해석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하다가 법사위 가서 또 문제가 되면 이 조항 때문에 다른 급한 조항까지 다 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잘 도와주셔 가지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배분 비율을 대통령령에 못 박은 것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임오경 위원님 말씀 주세요.

○**임오경 위원** 이것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지요?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예, 신축성을 저해한다.

○**임오경 위원** 올해 지금 65%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2024년도에는 한 55% 사용했나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은 문체부가 바보짓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떨어진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기재부가 지금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법안소위에 오셔서 차관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개보수,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주체단체 지원,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 지역에 인프라 부족하다고 해서 체육진흥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그 법안도 발의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계속 그렇게 저희가 외쳐 왔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게 떨어진 법정 배분 비율도 100%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00% 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말하는 것처럼 일부 남겨 놓을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80%에서 90%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문체부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재부를 탓할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저희들도 반성하고요. 이것은 강행규정이라는 입장으로 기재부랑 협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35% 정도의 차이…… 3.5%의 어떤 그런 문제도 아니고 35% 정도의 차이가 나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요청을 했어야 됩니다, 기재부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임오경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다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안은 다시……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 법안이지만 문체부에서는 가장 필요한 법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조금 계류시켰다가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계류시켜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위원님……

조 위원님 말씀 주세요.

○조계원 위원 이게 그러면 강행규정이 아니고 부대의견으로 달자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부대의견으로 강하게 의견을 달아 주시기를 저희들은……

○조계원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계속해서 못 사용한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원래 정해진 5%, 5%, 10%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다음 연도에는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런 조항을 달아 주시면 기재부가 비율대로 다 줄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오히려 강제 효과는 더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해당 연도에 제대로 집행하면 다음에 이월해서 사용할 것은 없어지는 거니까 기재부의 강제 효과가 부대의견보다도 이렇게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35%를 다음 연도에는 쓸 수 있다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런데 거기에도 또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계원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그래도 강제 효과는 부대의견보다 법적으로는 강하지 않겠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조항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이 되지요.

○조계원 위원 오히려 그렇게 검토하는 게 낫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예산의 단년도 편성 원칙이 있어서 그 조항은 넣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요? 당해 연도?

○소위원장 박정하 민 위원님 말씀 주세요.

○민형배 위원 차관님, 21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배분 비율에 균접해 있다가 22년부터 툭툭툭 떨어진 이유가 뭐니까? 문체부가 잘못한 겁니까, 기재부가 잘못한 겁니까, 현장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때 분위기가 긴축재정 기조로……

○민형배 위원 이게요 정부 바뀌고 나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딱…… 제가 생생해요, 지금도. 여기저기 있는 예산 중에 특히 체육 쪽에 배분되어 있는 예산을 대폭 깎아서 다른 데 쓴 거예요. 그때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재부하고 문체부가 동의해 준 거잖아요. 그랬었지요? 체육과장 하셨다면서요,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때는……

○민형배 위원 그때는 잘 됐잖아요, 거의 5, 5, 10에 가까이 가도록. 그랬는데 22년부터 이게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소위원장 박정하 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원칙적으로 좀 들어 봅시다, 원칙적으로.

이게 5, 5, 10에 가까이 갈수록 문체부나 국민들한테, 특히 체육계 쪽에서는 유리한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입법의 방향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법으로 확보돼 있는 예산을, 이 기금을 배분하는 비율에 맞추어서 최대한 5%, 10%까지 가도록 하는 게 문체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도 그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 뭘 여기서 다른 복잡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법체계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최대한 강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문체부가 여기서 뒤로 물러서세요? 기재부 때문에?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이것에 걸려 가지고 법사위에서 어쩐다는 그런 염려를 왜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을 해 보세요, 답.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시라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법사위 가면 타 부처의 반대가 있으면 그것을 또 2소위로 보류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 왔는데……

○민형배 위원 그것은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저희들이 반도평 관련해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국가 이익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아니, 여기서 올해 같으면 지금 3.4, 8.0, 3.4로 돼 있는데 이것 액수로 따지면 1000억대가 넘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1000억이 넘습니다.

○**민형배 위원** 1000억대가 넘는 이 법정 배분 비율 사업 예산을 왜 문체부가 포기하려 그러냐고요. 확보해야지.

○**소위원장 박정하** 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문체부도 충분히 취지는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민형배 위원** 이 답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것을 결정합시다, 여기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확보해야 될 부처가 이것을 오히려 저쪽의 요구에 맞춰 주겠다고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소위원장 박정하** 예.

○**조계원 위원** 언제까지 법안이 결정돼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올해 안에…… 올해가 지금……

○**조계원 위원** 올해는 이미 늦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올 예산이요?

○**조계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산은……

○**민형배 위원** 아니요, 아직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국회에서 사실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국회에서 증액을……

○**조계원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결정이 돼야 되냐고요, 법안 의결이 돼야 되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법안 의결은 관계없이 예산심의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액을…… ‘이것은 강행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것 현재도 강행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법정 비율이 있는 것을 지금 기재부가 무시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기재부가 국회를 가지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문체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다른 부처에도 많아, 이런 게. 아셨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민 위원님 말씀 주신 건 문체부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김 위원님 말씀 주시고, 이것 다음 항 논의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현재도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법률에서 시행령에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을 했고 시행령에 정했으면 그 법정 비율은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 비율만큼, 그것은 대통령령이니까 행정부처는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그런데 임오경 의원이 그게 안 지켜지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이렇게 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승수 위원 그리고 실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계속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하니까 어떻게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재부를 더 압박해서 최소한 시행령에 있는 그 비율만큼 하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우리한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대안을 생각해 봤어요.

○소위원장 박정하 예.

○민형배 위원 가령 아예 하한선을 정해 버려야겠다. 레인지률 딱 정해서 90% 이상은 안 돼 내지는 95% 미만으로는 안 돼, 하한선을 정하라는 안을 대안으로 사실 저는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문체부한테 안을 마련해 오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던지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참고하셔서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안을 만들어 오세요. 저는 하한선이라도 정해야 한다고 봐요.

○김승수 위원 문체부에서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다 동의한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쓸어져 나오시는데 지역 어디를 가 봐도 다 체육 관련된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돈이 있으면서도 국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이 불합리한 것을 빨리 해소해서 계속 하루가 다르게 많은 체육 시설이라든지 수요가 급증할 텐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풀어서 공급을 안 해 주면 문제가 많이 심각해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문체부에서 계속 설득을 해서 그렇게 논의를 만들고 관계 부처도 마찬가지지요.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문체부에서 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2쪽입니다.

도핑 정의 확대 및 약물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신설 등입니다.

현행법상 도핑의 정의가 세계도핑방지규약상 금지되는 행위와 괴리가 있고 약물의 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자료 수집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 도핑 재정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도핑의 범위를 세계도핑방지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목적, 행위, 금지기준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법문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세계도핑방지규약상 치료목적사용면책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 규정으로 도입하고 있는바 선수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 및 비교의적 도핑 위반 예방 등의 측면에서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체계에 맞춰 수정하려는 개

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규정 보완과 관련하여 사업 및 운영 관련 명확성 제고, 법체계 정비 및 입법 미비 보완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는 정관 기재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경우에도 정관 기재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들은 전적으로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일부 문구에서 일부 문구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전문위원 김용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개정안에서는 2조 10호에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 복용,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 복용,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조 3항을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5조의3 2항에서 맨 끝에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을 현재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등등 추세에 맞게, 제공에 누설도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기를 바라고요. 48조 5의2 또한 맨 끝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을 ‘제공한 사람’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위원님.

○**진종오 위원** 차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쪽에 개정안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정부 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굳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그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전문위원님 의견에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권유해 주셔서 저희들은.....

○**진종오 위원** 권유이신 거지요? 제가 도핑방지위원회에서 6년 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이사라든지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핑이라는 것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인식하는 것이 ‘도핑이면 내가 나쁜 짓을 했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원 구성 자체가 매우 힘들고 선수들한테 다가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관으로 정한다’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정관’으로까지만?

○진종오 위원 그게 아니고 전부 원래대로 그냥.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때 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진종오 위원 예, 원래대로.

○민형배 위원 강제력이 좀……

○진종오 위원 왜냐하면 이 임원 자체를 구성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다들 기피하고 있고.

○임오경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을 보게 되면, WADA(World Anti-Doping Agency)하고 KADA(Korea Anti-Doping Agency)하고 지금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세계 도핑방지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하고 우리나라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WADA 것을 다양한 규정으로 우리가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진종오 위원 아니, 이건 임원이니까, 임원 규정은 다른 거니까.

○임오경 위원 지금까지만으로 놓고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좀 수정·보완했을 때는 충분히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꼭 대통령령으로 바꾸지 않고 정관으로라도, 일단 WADA와 KADA의 규정 정의만이라도 바꿔 놓는다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WADA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규정으로 도핑 거부·회피도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핑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을 먹은 행위만을 가지고 검사를 하더라고요, 약을 먹은 행위만 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약에 있어서는 치료 목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는 제가 지도자를 할 때 다이어트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선수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주는 약을 먹고 수면제를 복용하고 했었는데 도핑에 걸려서 결국은 국가대표를 박탈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5번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제법안을 계류를 시키더라도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은 세계도핑방지규약과 저희가 빨리 손발을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추가 의견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진종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요. 지금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도핑방지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게 있어서 굳이 대통령령에서 또 정하지 말고 법률에서 정관으로 그냥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종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렇게 수정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니, 개정안대로, 원래대로.

○진종오 위원 수정이 아니고 원래대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정하 추가적으로 더 말씀 주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7항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2쪽입니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립박물관은 통상 개별법을 제정하여 특수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관련법상 박물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관련법상 설치·운영기관의 업무에 자료 수집·연구·전시 등을 명시하는 형태로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경우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데요 아직 박물관의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및 스포츠 유물 수집·보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법적 근거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 4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5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2쪽입니다.

학생선수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 사항의 조례 위임입니다.

현행법상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은 국가사무이자 자치사무에 해당하는바 개정안은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세부 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권한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태권도 진홍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2쪽입니다.

태권도공원 내에 의료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응급환자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권도공원 내 자체 의료인력 배치 필요성에 대한 관계 부처·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법률 해석상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력'을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태권도공원 내 별도 의료인력 배치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이며 태권도진홍재단은 보건의료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전문위원 권유와 안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김승수 위원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의료인력도 법에 의료인력 배치 근거가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없다고 그립니다.

○김승수 위원 존경하는 민형배 의원님 이렇게 법안을 내셨는데 그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체육협력관입니다.

선수촌에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임의 배치할 수 있게 해서 자격이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까지 지금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임오경 위원 그것은 선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선수를 위한.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선수촌에 의료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딱 특정해서 규정돼 있느냐 그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선수관리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지금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다른데 태권도공원이잖아요. 선수촌 내에 의사를 배치하는 것은 선수를 위한 의사 배치고 공원 내에 의사를 배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승수 위원 저는 여기 태권도공원에 의료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오경 위원 진천선수촌은 별도로 선수촌 자체 내에 안전관리업체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도 안전관리업체에게 하청을 줘서 관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 태권도원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태권도원입니다.

○민형배 위원 진홍재단.

○임오경 위원 지금 거기 공원을 말하는 거지요. 진홍재단이지요. 그러면 진홍재단에서도 기본적으로 관련된 안전관리업체를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만 이것의 법적 근거를 둬야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경륜·경정장 내 의무실 등은 법적 근거 없이도 의료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는데 태권도원이 유독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러면 저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에도 일괄적으로 함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일반적으로는 지금 체육시설업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위생 기준 준수하면서 간호사, 응급 조무사·구조사들을 의무 배치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일단 수련을 하려 오시는 분이 학생이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선수들이 사실 와서 경기를 하거나…… 특성이 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왔을 때, 무주지역의 의료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좋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공공의료시설도 사실 되게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24년에 경기를 하면서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도 대전으로 가서 치료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상황이었고 안에서 사실 자체적인 공공시설을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그리고 격투기다 보니 사실 부상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태권도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둬서 안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들이 크게 이슈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진 위원님.

○진종오 위원 먼저 하세요.

○소위원장 박정하 김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재원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기재부의 입장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올림픽공원 내에도 지금 보건관리자를 의무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 규정을 같이 적용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태권도진홍재단만 왜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이런 것과 비슷한 공원들이 생기면 일괄 다 그 법을 따라야 하고 태권도공원 내에 의료인력 배치 근거 마련 또 무슨 공원 내에 의료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 갖고 일괄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런 의견인데요.

그런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올림픽공원처럼 왜 의무채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약간 예상 이슈도 있는 부분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법적인 요건이 있는데 사실 태권도공원은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는 제조업같이 안에 무슨 상품을 제조……

○김재원 위원 아니요. 지금 올림픽공원 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의무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산업 현장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그러니까 인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태권도원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인원 기준을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연 30만 명 이런 기준이 아니라 기준 자체를 조금 올리는 게 낫지 이것을 태권도진흥재단에만 한정해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진 위원님 말씀 주세요.

○진종오 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정의견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 측에서는 의료인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료법에 보면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과연 정말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거는 의료법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협력관님, 아까 대회할 때 대전까지 갔어야 됐다라는 말씀 주신 것 이해하는데 태권도공원 하루 인원이 얼마 정도예요? 평균이 파악이 됐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연간 30만 명?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한 달에 한 3만 명, 2만 8000~3만 정도, 제법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원장 박정하 대회는 어떻게 돼요? 매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매일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연중으로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경기들도 있고 국제경기들도 있고 10여 회 이상 열리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연수, 수련, 체험 그것도 일종의……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맞습니다.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격투기 종목이다 보니까 부상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는 보통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슈이고 사실 태권도원 같은 경우는 방문하시는 훈련인력이나 경기인력에 대한 의료 처치가 필요하다는 이슈여서 약간 조금 다르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의료인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법에 이걸 넣은들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두 번째는 그래도 유사기관들하고 법체계상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만 이렇게 특정해서 의료인을 둘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유사기관들의 법률 체계상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지에 떨어져 있고 경기뿐만 아니라 활동성이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상이나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 특수성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 이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조계원 위원** 다만 간호사가 응급조치나 이런 걸 할 수 있나……

○**진종오 위원** 저는 차라리 아예 상향시켜서 의료진이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요.

○**조계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법적으로 상근체제기 때문에 일단은 의료인력을 두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정하** 혹시 민형배 위원님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민형배 위원** 제가 이걸 발의를 한 건 예전부터 제가 태권도 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쪽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다른 체육시설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문자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4쪽, 5쪽에 자료가 있는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 그래서 재단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료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된다,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요. 여기에 지금 강제규정도 아니고 둘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재단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최성희**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거기가 의료시설이…… 도심 한가운데 있거나 그러면 이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오지고 그래서 지금 조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 문제 제기를 해 왔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민형배 위원님, 태권도공원에 대한 애정과 그 관심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 드린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른 의견도 있고 다른 재단과의 형평성 문제, 법상 문제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하지요.

의사일정 제9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먼저 2쪽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제정됐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현행법에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8월 제1차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5년

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전통무예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통무예 현황 등에 대해서는 3쪽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조문별로, 먼저 목적 및 정의인데요.

안 제1조(목적)은 현행법 조문에 ‘미래세대에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멸 위험이 있는 전통무예 정신의 확산·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정의)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닌 문화는 전통무예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전통무예의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바 전통무예를 문화 그 자체로 재정의하고, 현행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의미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전통무예 실태조사는 2019년 4월 스포츠과학원에서 실시를 한 번하고 그 이후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곤란하며 수시조사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바 주기적인 전통무예 실태 파악을 위해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취소 또는 해제 관련하여, 먼저 지정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동 사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정 해제 관련하여 개정안은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지정 해제는 공익을 이유로 그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인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률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전통무예단체·국제무예센터·전통무예지도자, 8항부터 10항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행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자격 검정제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현재 동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전통 무예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2쪽입니다.

전통무예 교육 지원,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먼저 전통무예 교육 지원은 전통무예를 문화 원형의 연구·보존에 그치지 않고 표준화된 교육체계 마련, 전문인력 양성과 보수교육 추진, 생활체육·마음가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의 접목을 통해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은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체계화된 것도 전통무예에 해당하는 등 전통무예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전통무예 문화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인데요.

현행법은 전통무예 진흥 업무의 일부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규정까지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전문성 및 수혜자의 편의성 제고 등 측면에서 위임 규정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조금 복잡한데요 조문별로 좀 가겠습니다.

7조입니다. 6조까지는 개정안과 의견이 같고요. 7조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입니다.

저희들이 수용하지만 약간 수정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와 관련해서 2항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부 의견은 무형유산법의 사례를 참고해서 해제의 사유를 1·2·3호로 해서 1호 ‘종목 및 단체의 소멸’, 2호 ‘종목 특성의 상실’, 3호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해제 사유를 나열하면서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6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의 2항에 연수 및 검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자격·연수 및 검정에 관한 사항은 11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수정했으면 합니다. 11조에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1·2·3항으로 신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축조심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 주셔야지요.

○임오경 위원 이거는 21대에서 여야 공청회도 다 끝났고요.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왔던 건 딱 하나여서요. 마스터 대회 지원에 있어서 지원해야 한다 그것 하나를 좀 삭제시켜 달라고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회 지원에 관련돼서는 전면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공청회도 다 끝났고, 그 당시에 공청회에서도 여야 큰 문제는 없었고 그 당시 정부 측의 문제점을 반영을 시켜서 제가 다시 재발의한 법안인데 이 법안은 전통무예, K-콘텐츠의 원류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현행법에는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전통무예 육성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그간 무예계, 문체부 등과 협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정의나 지정이나 실태조사 그리고 기타 전통무예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제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무리한 것은 다 배제를 시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간단한 건데요.

○ 소위원장 박정하 조계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조계원 위원 아까 11조로 표현한 게 10조의2로 되어 있네요?

○ 전문위원 김용규 지금 당장은 10조의2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11조로 다 밀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 소위원장 박정하 김재원 위원님.

○ 조계원 위원 그러면 이따 의결하려면 11조로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까?

○ 소위원장 박정하 수정 의결하는 거니까.....

○ 김재원 위원 이 법안의 취지에 전면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하나 아까 말씀하신 7조 2항 부분에 개정안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부 측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이 무형유산법의 사례를 참고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1번, 2번에 종목 및 단체의 소멸, 종목 특성의 상실을 했을 때라는 구체적인 규정을 함으로써 이 부분 반영해 가지고 그냥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박정하 추가적으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규 2쪽입니다.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연 2회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도박중독은 절도·폭력과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등 사후 치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도 중요하므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며 다음 쪽 보시면 전남도교육청은 도박중독예방교육 2회 실시 의무화는 부담을 가중하는 것인바 별도 조항 추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청소년 도박 자체가 불법이라서, 18조의4에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어를 ‘도박예방교육’으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4항에서도 ‘도박중독예방교육’으로 돼 있는데 그 용어를 ‘도박예방교육’으로 용어만 좀 변경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은 ‘도박중독예방교육’을 ‘도박예방교육’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먼저 12항입니다.

2쪽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시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규정 신설 및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을 통하여 안전한 관광숙박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 근거 마련입니다.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시설에 대하여 불법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사의 주체를 권한이 있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으로 명시하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사례와 같이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 시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2쪽입니다.

성범죄 전력자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등록 금지입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법과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사업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한옥체험업은 주거지역 등에서 한옥 숙박 및 전통문화 체험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다른 관광사업에 비해 이용자가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해당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2쪽입니다.

테마파크 사고 관련 보고의무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근거 등 마련입니다.

현행법은 테마파크시설 중대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 시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규정된 바 없고 사고 조사 및 테마파크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의 권한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져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고 조사 등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안 제3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사고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조사 결과를 테마파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조치 시 해당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 작성·배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사실과 조치 내용 등을 보고받고 이를 종합하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사고기록대장 분석·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 신설을 통해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2항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표현만 전문위원께서 권유해 주신 대로 78조 3항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78조에 6항을 신설해서 ‘제3항의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할 경우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13항, 14항에 대해서는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3항입니다.

14조의2(결격사유)에서, 다 수용하지만 표현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법인의 경우까지 별도로 구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등록과 법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문제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해서 운영만이 아니라 아예 종사도 할 수 없도록 보다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14항은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진 위원님.

○진종오 위원 13항, 2쪽 개정안 주요 내용 중에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자라고 하는데 2년이 약간 짧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2년보다 더?

○진종오 위원 예, 2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길게 해서요?

○진종오 위원 예. 그래서 조계원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가 더 좋을지, 좀 짧은 거 같아서……

○김재원 위원 이거 타 법에도 2년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진종오 위원 현행법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소위원장 박정하 규정을 더 길게 하자는 진 위원님 말씀인데 혹시 전문위원님 타 법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다시 한번……

○진종오 위원 13항, 2페이지 개정안 주요 내용 보면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라는 게 2년이 약간 짧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용규 13항의 7페이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보시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거기는 3년으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런데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관광사업자 등록 이게 있어서, 같은 관광사업자라서……

○소위원장 박정하 거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진종오 위원 거기는 2년이고 여기는 3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같은 관광사업자라서 그 입법례를 따랐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조계원 위원 저는 3년 하는 게 더 좋겠다고는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없나요?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후 2년이니까 사실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2~3년 재판 기간이 있을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가장 유사한 법인 공중위생관리법, 모텔이나 거기도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고……

○소위원장 박정하 거기도 2년 규정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2년으로 되어 있고.

유사입법례가 놓어촌정비법에 민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2년으로 돼 있고 해서 유사입법례가 2년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3년이나 5년 개인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입법례가 있으니까……

○진종오 위원 예.

○소위원장 박정하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12번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사입법례를 보았을 때 불법카메라 단속 시에 관할 경찰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저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추가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13번 조계원 위원님 것인데,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등록을 못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 취소 혹은 영업소 폐쇄를 의무화하는 이 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등록자와 실제 운영 및 종사자가 다를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래서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수정안을 제안드렸고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등록자와 운영을 하는 자에 있어서 그러면 실태조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인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 지인을 써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등록할 수도 없고 그리고 혹시나……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바지사장 말하는 거예요.

○임오경 위원 예, 제가 바지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래서 저희들이 ‘종사할 수 없다’라고, 바지사장도 종사이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그렇게 보신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그러면 현장 실태조사,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4번을 보게 되면 현장 조사 결과 문체부장관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입법 취지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별도 입법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중앙사고수습본부 같은 경우에는 재난 같은 훨씬 큰 그런 것이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작더라도 장관이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범위와 정도 이런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크고 작은 걸 본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마지막으로 테마파크시설 안전정보시스템을 사고기록대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요? 문체부가 테마파크시설 안전정보시스템을 사고기록 대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계원 위원 그것은 자동으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임오경 위원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원인 분석, 재발방지 등에 활용하는 입법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테마파크시설 안전정보시스템을 사고기록대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을 법에다가 명시하면……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문화체육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하여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조항이 내부에 반영……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법안에 완전 명시……

○조계원 위원 이게 활용하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반영이 돼 있는……

○조계원 위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잠깐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배포하도록 돼 있고 또 이걸 활용해서 대책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활용이라는 말이 이걸 다 명시해서 하자라는 것까지 다 포함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조계원 위원 그게 내용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정하 예,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회에 말씀을, 제안을 드릴 게 있습니다.

심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얌전하고 격식이 있어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빈 종이가 너무 많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우리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예. 다음부터는 심사자료에 빈 페이지를 빼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기왕에 요약해서 읽는 부분에서 강조 표시 좀 진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예.

그리고 보좌진 및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심의했던 의사일정 제5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됐다가 다음 우리 소위 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정하 임오경 조계원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김용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체육국장 강수상

체육협력관 최성희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이진식